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85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31.

발의자 : 이인선 · 고동진 · 배준영

김태호 · 최수진 · 김정재

이달희 · 김기현 · 성일종
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.

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,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.

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3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·제2호,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운용 법인등”이라 한다)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

5.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
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
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
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
다)에 상장한 중소기업(이하
이 조, 제16조의2, 제46조의7
및 제117조에서 “코넥스상장
기업”이라 한다)에 2025년 12
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
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

6. 벤처투자회사, 벤처기업출자
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
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
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
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
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

12월 31일 ----- 2030년

